

질문답변서

(교통지도과)

질문의원

김성은 의원

【질문】

- 재래시장인 통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주변의 주차 단속을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.

【답변】

-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주·정차강력단속과 완화 요청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교통 혼잡지역, 보행불편지역, 어린이보호구역, 민원 다발지역 등은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소통과 보행 안전을 돕고 반면에 재래시장 주변, 교회, 식당가 등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신축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통인시장의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주차장이 마련되면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에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통인시장 동측 자하문로에 노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회에 걸쳐 서울시와 경찰청에 건의했으나 불법 이중주차와 차량정체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불가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만,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.
- 또한, 주차장 확충을 위해 중개업소, 동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적정 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.
의원님께서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질 문 답 변 서

(건설관리과)

질문의원

김 성 은 의원, 안 재 홍 의원

【질 문】

- 내수동 167 주차장 인근에서 야간에 불법 포장마차들의 영업행위 단속 (김성은 의원)
- 구기동 국립공원 입구 노점상에 대한 단속 (안재홍 의원)

【답 변】

- 불법노상적치물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의 현안 문제로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는 숙제중에 숙제입니다. 죄송합니다.
- 그동안 휴일과 야간에 수시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나 노점의 생존권 문제와 단속의 한계로 재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.
- 김성은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재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종문화회관 주변 5개소(포장마차2, 손수레3)에 대하여도 2월8일 야간에 단속원을 투입하여 자율 정비토록 계도하고, 구기동 국립공원 입구는 평일에는 노점상이 없으나 주말에는 등산객을 상대로 한 차량노점과 좌판노점 등 17개소 정도가 노점행위를 하고 있으며, 지난 2월11일(일) 전 단속원을 투입 하여 대대적인 단속과 하루종일 단속원을 배치하여 감시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야간 및 휴일에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등산객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질 문 답 변 서

(토 목 과)

질문의원	안 재 홍 의원
【질 문】 ○ 부암동 약수터길, 석파정길 포장문제? ○ 구기동 56번지일대 및 부암동 342(무계정사4길) 포장문제?	
【답 변】 ○ 상기 제기된 포장 문제는 토지소유자 35명중 24명(70%)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공사를 6월정도까지는 완료하고,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상태가 부분적으로 불량한 구간에 한하여 수시로 보수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. ○ 다만, 약수터길, 석파정길 도로개설은 부암동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내에 포함되어 있으나, 현황도로에 대한 이용계획이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해야 할 사항이므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질 문 답 변 서

(토 목 과)

질문의원	안 재 홍 의원
【질 문】 ○ 홍제천 복원공사관련 복개구조물 철거시 유출된 콘크리트 분말가루로 인하여 하천 자연환경 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등 시정요구	
【답 변】 ○ 홍제천은 종로·서대문·마포구 3개구에 걸쳐있으며 11.95km중 우리구 구간은 2.8km입니다. 시설형태는 하천 좌·우안 모두 옹벽, 석축, 반복개 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일부는 제방 겸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인근주민의 하천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○ 우리구에서는 주민이 이용 가능한 생태하천으로 복원코자 현재까지 250억의 예산이 마련되어 지난해부터 신영상가아파트 보상·철거 등 하천변 열악한 시설을 정비하고 하천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 ○ 의원님께서 홍제천 하천복원 공사중에 하천 환경오염 피해실태 및 심각성 등에 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신영아파트건물 철거당시 복개구조물의 일부구간이 붕괴되어 그 수거과정과 하천복원공사 초기 상류측에 물막이 작업후 하천 좌안측으로 마대를 쌓아 하천수를 하류측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철거된 콘크리트 분말가루가 하천수에 섞여 일부 유출되었습니다.	

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.
사과드립니다.

- 따라서, 하류측에 유출된 콘크리트 분말가루 제거작업은 이미 끝냈고,
추가유출을 방지코자 상류측에서 유입되는 하천수가
공사구간내 콘크리트잔재와 섞이지 않도록 좌안 기존 복개
구조물내로 완전히 분리하여 배출하고 있으며,

하류측에는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피해를
최소화하고자 시설을 보완하여 수질이 개선된 상태입니다.

- 또한, 이러한 환경오염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
철저히 하고,
수시로 홍제천 수질을 조사하여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
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.

질 문 답 변 서

(토 목 과)

질문의원

이 숙 연 의원

【질 문】

- 제설과 수방대책으로 인하여 비상 근무하는 동사무소와
구청 제설작업팀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지 여부 ?

【답 변】

- 수고하는 주민과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
이숙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
- 구에서는 제설 및 수방 근무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금으로
4,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77조(능률증진
을 위한 실시사항) 및 서울특별시종로구표창조례 제2조(표창
대상)의 규정에 의거 자체 평가하여 최우수동, 우수동, 장려동으로
구분하여 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- 다만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
규정에 의해 주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
(지방단체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)인 음식물 제공행위로서
공직선거법 위반 내지 저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
- 그러나 제설과 수방대책으로 비상 근무하는 동사무소와
구청 직원에게는 별도의 급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
예산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